



202.12 호

행정 명령

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(Executive Order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COVID-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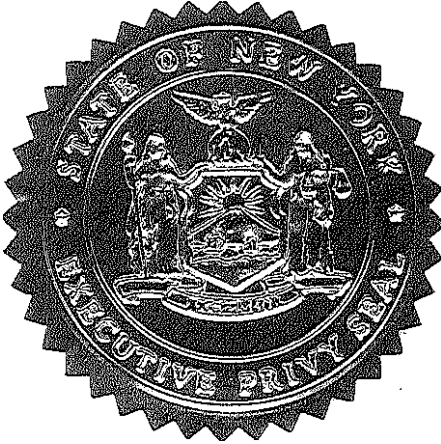
따라서 오늘, 저 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, 조례의 특정 조항, 명령,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이 부여한 권한으로,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4월 27일 월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.

- 연례 거주민 확인 및 공지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(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s)의 지시에 따라 우편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선거법(Election Law) 제4-117조 부속조항 (1).
- 비상 사태가 선포되었을 경우 조세 커미셔너가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90일 이상 100일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세법(Tax law) 제171조 28.

또한, 행정부법(Executive Law) 2-B조의 제29-a항이 부여한 권한에 의거,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27일 월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.

- 2020년 4월 28일로 예정된 모든 대통령 예비선거는 2020년 6월 23일로 연기하여 정합니다.
- 27번 지역구(Twenty-Seventh Congressional District), 하원 12번 지역구(Twelfth Assembly District), 하원 31번 지역구(Thirty-First Assembly District), 하원 136번 지역구(One Hundred and Thirty-Sixth Assembly District), 상원 50번 지역구(Fiftieth Senate District) 등 2020년 4월 28일로 예정된 모든 특별 선거는 2020년 6월 23일로 연기하여 새롭게 일정을 정하고, 투표 용지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
- 주정부의 면허를 받은 모든 28조 시설은 면허 취득의 조건으로서 진통/출산 시 발열이 없는 한 사람이 출산하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.



2020년 3월 28일 올버니시에서

본인이 서명하고 주

정부 관인을

날인하여

선포합니다.

주지사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be "Mr. C" followed by a long, sweeping horizontal line.

주지사 비서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be "Add. Cuomo" in a cursive style.